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대응 및 모니터링

과제명

- 2024년 다자기구 회의 감염병 분야 의제 대응 전략 연구

출장기간

- 2024.04.21.(일)~2024.04.28.(일)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제네바)

출장자

- 김수진 연구위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4.21	인천/제네바	-	-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04.22.-04.26	제네바	WHO 본부	회원국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04.27	제네바	-	-	제네바 출발
04.28	인천	-	-	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일시	2024.04.21 (일)

장 소	인천국제공항 → 스위스 제네바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출국 및 숙소 도착	
②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4.04.22 (월) 09:30-17:3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p>의제 1. Opening of the session and adoption of the agenda 사무총장은 합의를 만들기 위한 작업반의 노력을 치하하며 한주동안 진전을 실질화하고 확인된 갭을 줄이기 위한 형평성 조항에 포커스할 것을 촉구하며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INB와의 협력과 함께 미래를 위한 강한 IHR과 팬데믹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동의장은 팬데믹이 제기한 과제와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작업 마무리를 강조하며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를 언급하며 IHR 개정을 통한 미래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p> <p>의제 2. Overview of the proposed approach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s 의장은 조항 논의 후 특정 단락을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EU는 정리된 문구에 대한 회람을 요청함.</p> <p>의제 3. Consideration of proposed amendments, including text proposals from the Bureau and the outcome of intersessional discussions ○ 13조 공중보건대응 회원국은 13A조를 통합한 의장단 안을 대체로 지지했으나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함. 제목에서 including access to health product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조항이 많은 공중보건대응을 다룬다는 것을 고려해 건강제품 강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일본)과 기존 제목 유지를 제안했고(스위스),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지지 입장을 밝힘(말레이시아, 피지, 중국, 칠레 등). 회원국은 1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일본, 미국, 브라질, 호주 등) 1항에서 팬데믹 정의 검토 필요성(아프리카 지역, 중국, 호주 등), 부속서1과 일관성 측면에서 예방 포함을 제안했고(미국, 피지, EU, 중국, 칠레) 방글라데시는 유보함. 1bis 항에서 핵심역량 구축, 강화, 유지를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shall이 아닌 should 사용(아프리카지역, 이집트, 미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피지, 모나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국가법에 따른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함(미국, 모나코, 중국,</p>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은 협력 문구인 44조와 연계를 제안함(아프리카지역, 이집트, 방글라데시). 의장단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 44조로 해당 조항을 통합함.

2항과 3항에 대해 대체로 동의함.

4항에서 WHO가 PHEIC 결정 후 당사국 지원 제공에 대해 shall로의 교체와(미국) 기존 may 사용 의견(러시아)이 제기됨. 당사국의 응답에 대한 rationale 제공과 관련해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including 가 아닌 provide 사용(EU), 당사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offer를 거절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고(일본) rationale 제공에 대해 “as appropriate” 추가를 제안함(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응답에 대해 48시간 내로 제한하자는 의견과(미국) 현재 문구인 가능한 빨리 유지 의견이 제기됨(칠레). 국가 부담 측면에서 해당 문구 삭제 의견을 제기했고(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중국 등) EU는 유지를 제기했는데 중국은 주권 문제임을 언급하며 마지막 문장 삭제를 요청했고 as soon as possible도 타임라인이며 보다 유연한 문구일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5항에서 WHO 조정 기전 지원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shall) 부담을 줄이기 위해 fullest 삭제와(미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subject to its national law and available resources 문구 추가를 제안함(미국, 한국, 스위스). 또한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within the means and resources at its disposal 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보함(미국, 한국, 사우디). 너무 많은 완화 문구에 반대하며 IHR 문구 유지를 제안함(아프리카 지역)

7항에서 회원국은 건강제품에 대한 접근 외에 unhindered access를 추가하는 의견과(이란, 중국 등) 44조 등에서 다룰 것을 제기하며 반대함(노르웨이, 미국). 지원의 범위를 나열한 문구에 대해 shall 대신 may 사용(스위스), 건강제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에서 relevant로 건강제품 한정 의견을 제안함(영국, 미국). 기술이전의 문맥 상 의미를 구체화 하기 위해 to diversify and scale up production 추가를 제안했고(일본, 이스라엘) 기술이전 외 노하우 추가와(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노하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expertise로 수정(영국), 기술이전 문구 포함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청함(스위스). 기술이전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단어 추가를 요청했고(EU, 영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다른 국가들은 삭제를 요청함(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상호합의라는 제한 문구에 대한 유보(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삭제 의견이 제기됨(나이지리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국은 기술이전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경우 자발적과 상호합의 2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로 두가지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국) 스위스는 구체화 수준을 다른 조항과 맞출 것을 제안하며 기술이전과 노하우를 삭제하고 이와 함께 자발적, 상호합의를 삭제한 수정문구를 제안했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동의함(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일본 등)

③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4.04.23 (화) 09:30-21: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 조기행동경고 및 팬데믹 이머전시

2조 정의에 조기 행동 경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현재의 과정을 공식화한 경고 발행과 이를 통한 조정된 행동 필요성을 지지했지만(호주, 영국, 미국, 피지)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고(피지), 현재도 EIS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조기 행동 경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도,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새로운 경고 도입이 현재의 행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검토위원회의 의견(중국),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며 조기 행동 경고가 국제 무역 및 여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아프리카 지역). 전반적으로 정의에서 조기 행동 경고를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조기 행동 경고는 삭제하기로 함.

팬데믹과 팬데믹 이머전시 정의와 관련해 팬데믹이 역학적 용어이며 IHR 조항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팬데믹 이머전시만 정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EU, 노르웨이, 아프리카지역, 일본, 영국 등). 정의에서 political disruption 삭제와(브라질, 인도, 방글라데시, 영국 등) 보다 높은 수준임을 명시하기 위해 highly likely 와 같은 문구 사용을 제안함(일본).

○ 12조

제목과 1항에 연속성 측면에서 early action event 추가를 제안했으나(미국) 팬데믹 이머전시를 포함하되 조기 행동 문구 포함을 지지하지 않음(아프리카지역, 이집트, 방글라데시). 중국은 팬데믹 이머전시를 레퍼런스에 의존해야 하는데 상승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pandemic alert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지만(중국) 회원국들은 alert는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하므로 팬데믹 이머전시를 선호함(인도네시아, 미국, 모나코, 브라질 등).

4bis 항에서 사무총장의 팬데믹 이머전시 결정과 관련해 모든 PHEIC이 팬데믹 이머전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shall이 아닌 may 사용을 사무총장의 권한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브라질, 피지 등) PHEIC 과 팬데믹 이머전시에 적용될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안함(아프리카지역, 이집트).

회원국은 조기 행동 경고 관련 문구는 삭제하되 PHEIC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자문 제공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노르웨이, 브라질, 한국, 피지, 호주, 아프리카 지역 등) 사무총장의 정보 제공 재량을 위해 shall 대신 may 사용을 제안함(EU, 터키 등). 한편 일부 회원국은 추가적인 지원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기행동경고 문구 포함을 강조했고(영국, 미국) 조기행동경고가 contingency fund 사용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을 제안함(일본).

○ 15조, 16조, 17조, 18조

조기 행동 경고 포함을 제안했고(미국) 의장단은 임시 및 상설권고안은 PHEIC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함. 2항에 관련 건강제품을 포함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안했고 건강제품 접근성 관련 15조 2bis, 16조 2항, 17조 d bis, 18조 b 항 삭제를 요청함(스위스).

18조 3항 국제 여행 촉진 대상과 관련해 범위를 넓히는 including 보다 선택적인 particularly of 사용을 제안한 반면(일본, 스위스, 호주) 일부 국가들은 transport worker 추가를 제안했는데(EU, 나이지리아) 다른 국가들은 이에 반대함(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가족 결합이 인도주의 상황인지 확인을 요청함(브라질).

④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4.04.24. (수) 09:30-21: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 1조 정의- 건강제품
 건강제품의 정의와 관련해 WHA72.8에서 정의한 건강제품의 정의(health products include medicines, vaccines, medical devices, diagnostics, assistive products, cell- and gene-based therapies, and other health technologies)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중국, 브라질, 미국 등).
 공중보건위기맥락에서 WHA72.8에서 정의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PPE와 decontamination product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브라질,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아프리카 지역 등) medicine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학물질, 핵물질 대응에 필요한 antidotes 추가와(인도, 미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 health technologies 포함을 제안했는데(브라질, 아프리카 지역 등) health technologies 는 procedure 와 시스템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반대함(미국, 영국, 캐나다). 건강제품의 정의는 가능한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동의와 함께, 광범위한 정의를 고려해 IHR에 맞게 공중보건위기맥락과 관련된 제품으로 한정하는 relevant health products를 정의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 회원국들은 동의함.

○ 1조 정의- dossier
 product dossier에 대해 의장단이 제안한 정의에서 회원국은 ICH가 민간업체이므로 삭제 의견을 제기했고(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사무국은 해당 기관이 dossier 내용을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함. 회원국은 product dossier가 전체 IHR 13조 8항에서 한차례 언급되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면(13조 8-d 항에서 “for approval을 추가)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며 정의에서 삭제하기로 함. 13조 8항의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일본)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를 삭제하고 state party를 사용하기로 함.

○ 2조 목적과 범위
 건강제품, 건강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형평한 접근 제공을 포함한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고(아프리카지역, 이집트, 이란) 범위 확장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스위스). 아프리카 지역은 13조와 44조 논의에 따라 합의할 것이라며 유보함. 의장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며 시간

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힘(의장).

○ 3조 원칙

원칙에 형평성 포함을 인정하되 within 혹은 among all people을 추가하여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 내 형평성을 다룰 필요성을 제기했고(일본, 미국) 의장단은 between 이 아니라 among 사용을 통해 해당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EU는 다른 언어로 번역 시 이를 고려할 것을 확인함.

○ 4조 책임 당국

2bis 항에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할당한다는 문구 삭제를 요구했고(아프리카지역) EU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제기했고 콜롬비아는 국내 법적, 행정 제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제기함.

4항 National IHR authorities의 연락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고(아프리카지역) 공동의장은 일부 문제는 NFP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설명했고 아프리카 지역은 WHO와 정보 공유는 유지하되 회원국과의 공유는 NFP 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함(아프리카지역). 사무국은 국가간 협력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5조 감시

1항과 관련해 부속서1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보함(아프리카지역)

○ 6조 통지

1항 당사국의 사건 평가와 관련해 부속서1의 핵심역량에 관한 시간 문구에 따라 48시간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미국, EU, 일본) 부속서1에서는 평가할 역량으로 정의하여 6조의 문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의 역량 및 환경에 따라 48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중국, 잠비아, 러시아) 미국은 제안을 철회함.

회원국은 14조에서 다른 기구에 대한 통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6조 1항에서 추가적인 언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말레이시아) 이는 6조는 통지이고 14조는 통지 후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됨.

○ 8조 협의

부속서 1이 레퍼런스로 제시되었으나 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며 48시간 제한 문구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확인하며(일본,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WHO와의 협의에 대해 시의성 있게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의함(일본, 브라질, 방글라데시)

○ 10조 검증

3항은 협력 제공 문구로 가능한 빨리보다는 upon receiving을 사용하여 WHO가 정보를 받자마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브라질, 미국) 해당 구문에 대체로 합의함.

회원국이 협력 제의를 거절한 경우에 대한 4항에서 다른 국가들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문구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것임을 고려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Shall 사용을 제안한 반면(호주, 미국)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유연성을 위해 may 사용을 제안함(중국, 잠비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등). 사무국은 회원국이 잠재적인 PHEIC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싶은지에 따라 조동사 선택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미국은 WHO가 정보공유의 재량 가

지지만 WHO를 더 취약하게 만들며 공중보건위험의 크기가 정당화될 때임을 고려해 조기 정보 공유를 위한 Shall 사용을 강조함(미국, 노르웨이).

○ 11조 WHO의 정보 제공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조기 행동 경고를 제외한 의장단안을 지지했는데(아프리카지역, 이집트, 한국, 캐나다, 브라질 등) EU는 정보 제공을 대상으로 regional body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중국, 인도 등은 유보함.

○ 24조 Conveyance operators

1-a항에서 isolation and quarantine이 18조에 이미 언급되므로 삭제를 제안했고(이란) 공동의장은 코로나 경험에 근거해 on-board isolation and quarantine이 핵심적인 조치였으며 다른 조항에서도 강조를 위해 반복한다고 설명함(의장).

○ 42조 건강조치 이행

all practicable 매우 broad하므로 삭제하고 as appropriate 추가를 제안했고(미국, 러시아) national law 외에 international obligations 추가를 제안했는데(EU) 국가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반대하며(방글라데시아 인도 러시아) 철회하고 national law를 applicable law로 수정 제안함(EU). NSA 참여와 관련된 문구 추가에 반대하며 현재 IHR 문구유지를 제안함(이란).

○ 43조 추가 건강조치

2조의 내용을 반영하는게 중요하므로 3bis 항의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facilitate 대신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고(미국) shall 이 아닌 should 사용을 제안함(일본).

○ 48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의장단안을 지지했으며(방글라데시, 한국, 브라질, 미국, 인도 등) 아프리카 지역과 이집트는 팬데믹 이머전시에 대한 2조 논의 완료 필요성에 따라 유보함.

○ 49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조기 행동 경고를 제외한 의장단안을 지지했으며(브라질, 한국, 중국, 아프리카 지역 등) 아프리카 지역과 이집트는 팬데믹 이머전시 부분을 유보함.

⑤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시	2024.04.25. (목) 09:30-21:00
장소	WHO 본부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 부속서 1

1-(a)에 그간 논의에 기반해 prevention 포함을 제안했고(EU, 미국) 핵심역량에 예방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한 바 없으므로 반대하며 13조와 44조에 따라 재논의할 것을 제안함(방글라데시). 4항에 대해 44조가 논의 중으로 유보했고(러시아, 인도, 브라질)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제기하

며 삭제를 제안함(일본).

shall이 있으므로 fullest 삭제. subject to applicable law and available resources 와 as appropriate 추가를 제안했으며 WHO를 지원한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함(미국)

예방, 감시, 대비,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요구사항과 관련해 각 수준별 일관성을 맞출 것을 요구함(중국).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시스템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는 것을 우려했고(호주) 지역 사회 수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ensure을 현실가능성을 고려해 facilitate 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미국), 국가수준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제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를 계획하도록 하는 문구 추가를 제안함(미국, 캐나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 지역생산 문구 추가를 제안했으며(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소규모 국가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반대하면서(노르웨이), as appropriate 추가를 제안함(방글라데시, 피지 등).

biosafety 와 biosecurity 추가를 제안했으나(미국) 전체 IH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핵심역량으로 포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함(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지역, 러시아).

전반적으로 health products 는 정의와 동일하게 relevant를 추가하고(미국) public health risks and other events에서 other events 가 혼란을 야기하므로 risks and events로 수정하기로 함.

지정된 공향, 향만 및 지상 횡단에 대한 핵심 역량 요구 사항과 관련해 샘플분석 문구 추가와 관련해 laboratories 추가 필요성을 제기함(일본).

○ 44조

선진국은 제목에 including financial assistance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44조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해당 요소 강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삭제를 요청한 반면(일본, 스위스,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은 연대의 원칙을 강조하며 형평성 제목 유지를 제안함(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의장단은 자금조달, 협력, 지원이라는 자금조달을 함께 나열하는 제목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은 자금조달을 뒤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며(일본, 한국, 미국, 아프리카 지역 등) 합의함.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의무에 대한 pre-1항에서 국내 자금동원에 shall은 어려움 있으므로 should 로 수정을 제안했고(미국, 파키스탄) financing 은 financial assistance와 다르므로 international funding 은 맥락 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고(호주, 미국) 개발도상국들은 지원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삭제를 반대함(방글라데시)

1항 회원국의 협력 의무와 관련해 일부 회원국은 shall을 포함하는 의무 구문이라는 점에서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에서 fullest 삭제와(스위스, 캐나다, 모나코, 영국 등) 보다 완화를 위해 as appropriate와 subject to the national law and other context 추가를 제안한 반면(미국)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문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하며(이집트, 이란 등) 검토위원회 제안에 근거해 assist의 필요성을 강조함(에티오피아, 우간다).

1항 c 자금동원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조하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는데(나이지리아, 방글라

데시) 미국은 국가 역량 및 니즈와 국내 법 및 자원을 고려한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고 방글라데시 등은 삭제할 것을 요청함(방글라데시, 브라질, 아프리카 지역 등).

1항 e 에서 일부 국가는 의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캐나다) WHO-coordinated mechanisms은 삭제하고 13조에서와 유사하게 equitabl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mechanisms and networks 추가를 제안했으나(미국, 이스라엘) 다른 국가들은 삭제를 반대했고(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의장은 다른 기전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함. 접근성 앞에 equitable and unhindered를 추가할 것을 요청함(이란). 스위스와 러시아는 IHR 범위 확대라는 점에서 삭제를 제안함.

2bis에서 회원국의 협력에 대해 to the extent possible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캐나다, 호주, 영국)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기전을 포함하되 bearing in mind their capacities and needs라는 문구와 IHR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혹은 다른 IHR 도구가 확인한 것으로 한정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미국) 의장은 맥락 상 불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미국은 수정문구를 제안하며 회원국들은 합의함.

핵심역량 강화를 포함한 IHR 이행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보장한다(secure)는 문구에 대해 미국은 facilitate/enable 사용을 제안했고 방글라데시 등은 enable을 지지함(방글라데시, 브라질). 회원국들은 팬데믹 조약 등 다른 자금 조달 기전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문구를 수정함(모나코, 브라질 등). 국가수준 포함(러시아), 코디네이션의 주체 필요성 제기에 따라(아프리카) 공동의장단은 추가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⑥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4.04.26. (금) 09:30-17:3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 54bis 이행 및 준수위원회

제목의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준수를 support로 대체(파키스탄, 아프리카 지역, 중국 등) 혹은 monitoring/facilitating 으로 대체(아르헨티나)를 제안함.

미국과 콜롬비아는 MEA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UHPR이나 JEE 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적 책임에 기반하지 않으며 투표 방식이 아닌 합의에 기반해 협력적으로 이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정부가 지명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12-15명 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위원회가 국가와 협력적으로 대화하며 권장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건총회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제안함(미국).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 동의했는데 차별이 아니라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며(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지역별 할당을 통한 20인 정도의 소규모 위원회와 전체 IHR 이행을 다룰 것을 강조함(싱가포르).

러시아는 추가적인 자금, 인력이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위원회 구성은 타게티드 개정을 넘어선다는 의견을 제기함(러시아).

중국은 50조 검토위원회 TOR에 따라 functioning of these regulations를 다루며 implementation과 compliance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했고 사무국은 검토위원회는 전문가 로스터를 통해 구성되는 단기 위원회라고 설명함. 현재 기전과 중복을 만들지 않고 DG가 검토위원회 조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함(중국, 방글라데시). 또한 미래 E 위원회와 연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조항을 50조, 48조와의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함(중국).

멕시코는 코로나 경험을 통해 IHR 이행정도가 높은 국가를 포함해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훈이라며 격차를 확인하고 더 낮게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과 비효율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 이해되지만 콜롬비아가 제안한 안이 이러한 우려를 없애길 바란다고 제안함(멕시코)

브라질은 IHR 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포함을 강조했고 아프리카 지역은 집합적 결정 중요하므로 모든 국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격년 회의를 개최하며 각 지역의 특정 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2년 임기를 갖는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단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주요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함(아프리카지역).

1항 콜롬비아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복없이 상호연계된 하나의 위원회를 강조하며 다른 조약(팬데믹 조약)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고(콜롬비아, 싱가포르, 멕시코 등)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없이 함께 담는 방안을 제안함(호주).

a 기본 취지에 비춰 accountability 삭제와(콜롬비아, 아프리카 지역 등) actions 삭제(아프리카 지역), 형평성(중국)과 협력 추가(아프리카지역, 방글라데시)를 제안함

b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제공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 지원 목적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콜롬비아,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 구체적인 평가 방식 등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란, 인도)과 관련해 존재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호주).

2항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안했고(아프리카 지역),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가가 지정한 개인 전문가 참여를 제안한 반면(콜롬비아, 호주,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전문 지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으며(에티오피아) 개인전문가라면 차별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제기함(나미비아).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 문구 추가를 제안함(아프리카 지역).

3항 MEA 사례를 고려하며 너무 많은 참관인은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참여에 대한 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콜롬비아,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7항 합의에 기반한 결정을 강조하며 다른 관점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했고(콜롬비아,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 아프리카 지역은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을 제안함.

8항 개별 및 시스템 수준에서 이행과 준수의 문제를 검토한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하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행과 격차 확인 등 시스템 측면의 도전을 다루는 것과 함께(콜롬비아 등), 도전과 함께 강화방식을 다룬다는 문구 추가를 제안했고(호주) 아프리카 지역

은 해당 조항을 반대함.

회원국은 규칙에는 필수적인 것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의안으로 담거나(호주) 모든 국가의 참여 등에 대해 rules of procedure에 담는 것을 제안했고(미국) 13조 및(브라질) 이행위원회 권장안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44조와 연계를 제안함(미국, 브라질).

의제 4. Proposals from Member States for entities to be included in Annex D and/or Annex E to document A/WGIHR/7/6 [if any]

추가 의견없음

의제 5. Report of the meeting

회원국들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되지 않은 조항과 부속서에 대해 5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며 8차 회의 속개(5.16-17) 전 5월 10일까지 개정된 문구를 배포하기로 함.

의제 6. Closure of the session

의장은 8차 회의를 중단하고 속개하기로 함.

⑦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일시	2024.04.27.(토)~28(일)
장소	제네바 출국 및 귀국
참석자	질병관리청 이신예 사무관, 전영현 주무관, 김수진 연구위원
귀국	

①

제8차 IHR 개정 작업반 회의

